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3
----------	-------

발의연월일 : 2018. 5. 18.

발의자 : 윤영일 · 김철민 · 안호영

이원욱 · 남인순 · 임이자

이용호 · 박주현 · 박선숙

황희 · 이학영 · 천정배

백혜련 · 황주홍 · 이개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

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시설·단지 등 설치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단지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화물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부 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u>지방자치단체</u>,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43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p>
<p>1. ~ 7. (생략)</p>	<p>-----.</p>
<p>②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5조의2(시설·단지 등 설치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단지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화물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승인</p>

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